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022
----------	------

2016년 2월 25일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6년 2월 15일, 김동을 의원(찬성자 12명)
- 나. 회부일자 : 2016년 2월 17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
(2016년 2월 25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동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전문개정(2014. 7. 14.)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전문개정에 따른 불일치를 정비함(안 제4조).

3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- 본 개정안은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전부개정 (2014.7.14.)에 따라 변경된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반영하고,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해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,
- 현행 조례 제4조제4항에서 ‘건설위원회’를 ‘도시안전건설위원회’로 변경하고, 그 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([표] 참조).

[표] 현행 및 개정안 비교표

현행	개정안
<p>제4조 (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) ①~③ (생략)</p> <p>④ 제3항에 따른 자문 또는 협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,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 2명과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⑤~⑥ (생략)</p>	<p>제4조 (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) 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_____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_____</p> <p>-----.</p> <p>⑤~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 (입찰참가 자격 완화) ① 시장은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의 범위를 확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②~③ (생략)</p>	<p>제7조 (입찰참가 자격 완화) ① _____</p> <p>----- 제한해서는 -----.</p> <p>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 없음
7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9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 없음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 중 “건설위원회”를 “도시안전건설위원회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제한하여서는”을 “제한해서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 (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) ①~ ③ (생 략)</p> <p>④ 제3항에 따른 자문 또는 협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, 서울특별시의회 <u>건설위원회</u> 소속 시의원 2명과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⑤~⑥ (생 략)</p>	<p>제1조 (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) 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<u>도시안전건설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⑤~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 (입찰참가 자격 완화) ① 시장은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의 범위를 확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과다하게 <u>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</p> <p>②~③ (생 략)</p>	<p>제7조 (입찰참가 자격 완화) ① ----- ----- ----- -----<u>제한해서</u> <u>는</u> -----.</p> <p>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